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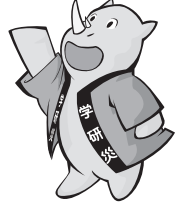
대인·대물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정규과정이나 학교행사 중 등에 발생한 배상책임사고를 보상합니다.(국내·국외)

학연재("Gakkensai") 부대배상책임보험 안내 ("Futaibaiseki")

다양한 배상책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의 지시에 따라 가입 코스를 선택하세요!



수업 중에 실험 장비의 센서를 망가뜨렸다.
→ A·C코스



통학 중에 보행자와 충돌! 보행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 A·C코스

인턴 파견회사에서 근무 중에 상품을 망가뜨렸다.
→ A·B·C코스



병원 실습 중에 지급받은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망가졌다.
→ C코스

A 코스 ("Gakkenbai")

수업이나 통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수업 중, 학교행사 중, 그에 필요한 이동 중 등에 발생한 배상책임 사고를 보상합니다!

*B코스 보상 범위를 포함합니다.



B 코스 ("Intern-bai")

인턴 및 교육실습 등에 한정!

인턴 중, 복지간호 체험활동 중, 교육실습 중 등의 특정 활동 및 그에 필요한 이동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 사고를 보상합니다!
*의료 관련 실습, 약학교육 실무실습을 제외합니다.
*대학이 정규과정, 학교행사 또는 과외활동(주1)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C 코스 ("Igakubai")

의료 관련 실습 중에도 안심!

의료 관련 학부실습 중, 학교행사 중, 임상실습 중 및 그에 필요한 이동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 사고를 보상합니다!

*A코스와 B코스의 보상 범위를 포함합니다.



Gakkenbai(A 코스): 학생교육연구배상책임보험 / Intern-bai(B 코스): 인턴실·교직자격활동등 배상책임보험 / Igakubai(C 코스): 의학생교육연구배상책임보험

보상내용

일본 국내외에서 학생(피보험자)이 정규수업, 학교행사, 과외활동(주1) 또는 그 왕복중에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등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주1) 본 보험에서 「과외활동」이란 대학의 규칙에 의거한 소정의 수속에 의해 인턴실 또는 자원봉사활동의 실시를 목적으로 한 조직으로 승인을 받은 학내 학생단체가 실시하는 인턴실 또는 자원봉사활동을 말합니다. 그 외 클럽활동등의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정규수업 또는 학교행사에 맞추어 그날의 클럽활동(대학이 금지하고 있는 활동 등은 제외합니다.)에 참가하는 경우, 그 주거와 활동장소가 되는 시설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방법으로 이동중에 행한 행위는 대상이 되는 활동에 포함합니다.

가입 대상자

학교교육법이 규정하는 대학 중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찬조회원인 대학원, 대학 또는 단기대학에 재적하는 학생으로 "Gakkensai"(주2)에 가입 중인 학생에 한합니다.

(주2) "Gakkensai"는 학생교육연구재해상해보험의 약칭입니다.

보험 기간

4월 입학생이신 분 4월 1일 오전 0시부터 다음해 3월 31일 오후 12시까지
9월 입학생이신 분 9월 1일 오전 0시부터 다음해 8월 31일 오후 12시까지
10월 입학생이신 분 10월 1일 오전 0시부터 다음해 9월 30일 오후 12시까지

*1년간 가입한 경우입니다. 다년 가입의 경우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연도의 각 종료일까지입니다.
*보험 개시일 전날까지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은 분의 임의가입(학생이 가입을 결정) 보험기간은 보험료를 지불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각 종료일까지입니다. 전원가입의 내용은 P4를 참조하십시오.

가입 수속

대학에 따라 취급 코스와 가입에 따른 수속이 다르니 대학의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1. 대상 활동범위

보상내용	코스	A코스 (*1) ("Gakkenbai")	B코스 (*2) ("Intern-bai")	C코스 (*3) ("Igakubai")
인턴, 개호체험활동, 교육실습, 보육실습, 자원봉사활동 및 그 왕복(*4)		○	○	○
상기 이외 정규과정, 학교행사, 과외활동 및 그 왕복		○	×	○
의료 관련 실습 및 그 왕복(*5)		×	×	○

(※1) 의료 관련 실습을 제외합니다. 약학교육 실무실습을 포함합니다.

(※2) 의료 관련 실습 및 약학교육 실무실습을 제외합니다.

(※3) 의료 관련 실습을 포함합니다.

(※4) 대학이 정규과정, 학교행사 또는 과외활동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5) 의료 관련 학부·학과가 정규과정 또는 학교행사로 인정된 실습을 말합니다.

2. 보험금(지급 한도액)·보험료

		A코스	B코스	C코스
지급한도액 (*1)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합하여 한 사고당 1억엔 한도 (면책금액 (*2) 0엔)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1년간	340엔	210엔	500엔
	2년간	680엔	420엔	1,000엔
	3년간	1,020엔	630엔	1,500엔
	4년간	1,360엔	840엔	2,000엔
	5년간	1,700엔	1,050엔	2,500엔
	6년간	2,040엔	1,260엔	3,000엔

(※1) 피보험자 1인의 1년에 해당하는 지급 한도액입니다.

(※2) 면책금액이란 지급할 보험금 계산 시 손해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면책금액은 피보험자 자기부담이 됩니다.

*연도 도중에 가입하신 경우도 보험료분담금은 1년간 단위로 합니다.

*보험기간 중 탈퇴는 연도 종료에 맞춰 대응합니다.

3.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세한 것은 약관에 따릅니다. 보험약관 내용의 확인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1.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로 인해 보험기간중에 타인의 신체에 장애(장애로 기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입히거나 또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멸실, 파손 또는 오손)한 것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가. 상기 표의 '활동범위'에 정하는 활동(이하 '활동'이라 함)의 수행에 기인하여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시설배상책임보험)

나. 활동 결과에 기인해 그 활동이 끝난 후에 발생한 사고 및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과 정규과정, 학교행사 또는 과외활동(1페이지 주 1)의 성과물(약제 포함, 이하 '생산물'로 표기)에 기인하는 사고(생산물 배상책임보험)

2. 활동중인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타인의 재물(이하 [수탁물]이라고 합니다.)을 보험기간중에 멸실, 파손, 오손 혹은 분실, 또는 도난 혹은 사취당함으로써 수탁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수탁자 배상책임보험)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배상금이나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배상책임 승인·배상금액 결정에는 미리 인수보험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①피해자에 대해 지급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금
- ②인수보험회사의 서면 동의를 얻어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의 쟁소비용
- ③타인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의 보전·행사 또는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의 발생·확대의 방지를 위해, 인수보험회사의 서면동의를 얻어 지출할 필요가 있는 비용이나 유익한 비용
- ④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에 대해 필요한 수속을 하고, 또는 이미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손해의 발생 혹은 확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강구한 후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 응급처치, 호흡 등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 또는 인수보험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기타 비용
- ⑤인수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청구의 해결을 맡을 경우에, 인수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른 협력을 위해 지출한 비용

【보험금의 지급방법】

상기 ①의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지급 한도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기 ②~⑤의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상 그 금액이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②의 쟁소비용에 대해서는 ① 손해배상금액이 지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급한도액 ÷ ① 손해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삭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주된 경우

◆상세한 것은 약관에 따릅니다. 보험약관 내용의 확인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공통

- ①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 ②전쟁, 변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 ③지진, 분화, 홍수, 쓰나미 또는 높은 파도
- ④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약정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 ⑤배수, 배기에 기인한 배상책임
- ⑥핵연료물질, 핵원료물질, 방사성원소,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유해한 특성 작용 또는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는 손해(방사능오염, 방사선장해를 포함) 단, 의학적 또는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생긴 원자핵반응, 원자핵 붕괴·분열로 인한 손해로 그 사용·저장·운반에 법령위반이 없었던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⑦피보험자가 행하는 다음의 행위에 기인하는 손해(주)

- 의료행위 및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가운데 의사·치과의사·간호사·보건사·조산사 이외의 사람이 행하는 것이 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행위
- 약물의 조제, 투여, 판매, 공급
- 안마 마사지 지압사, 침술사, 뜸치료사, 유도점골사, 건축사, 토지가옥조사원, 기술사, 측량사, 수의사 이외의 자가 행하는 것을 금지한 행위

(주) 단, C코스에서 의료관련 실습으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A 및 C코스에서 약학교육 실무

실습으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기 가운데 「약품의 제조·투여·판매·공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설배상 책임보험

- ①자동차, 모터사이클(배기량 50cc 이하), 항공기, 승강기 또는 시설 밖의 배·차량(원동력이 오직 인력인 것은 제외합니다.) 혹은 동물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손해
- ②오염물질의 배출·유출·일출 또는 누출에 기인하는 손해 및 오염정화비용(단, 오염물질의 배출 등이 예측불가하고 돌발적이며 급격하고, 소정의 기간내에 피보험자가 발견하여 인수보험회사에 소정의 기간내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③석면, 석면의 대체물질 등의 발암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기인한 손해 등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 판매, 제공한 생산물로 기인한 손해
- ②생산물 자체의 손괴 또는 사용불능에 관한 배상책임
- ③일본국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본국외의 재판소에 제소된 손해배상청구
- ④오염물질의 배출·유출·일출 또는 누출에 기인하는 손해 및 오염정화비용(단, 오염물질의 배출 등이 예측불가하고 돌발적이며 급격하고, 소정의 기간내에 피보험자가 발견하여 인수보험회사에 소정의 기간내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⑤석면, 석면의 대체물질 등의 발암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기인한 손해 등

수탁자배상책임보험

- ① 자연발화 또는 자연폭발한 수탁물 자체의 손괴
- ② 수탁자가 기탁자에게 양도한 후 발견된 사고
- ③ 자전거, 오토바이, 모터사이클(배기량 50cc 이하), 자동차, 항공기, 선박, 차량, 동물, 약품, 지폐, 유가증권, 인지, 우표, 증서, 장부, 귀금속, 보석, 미술품, 골동품, 훈장, 기장, 원고본, 설계서, 모형 기타 이러한

- 류의 수탁물의 손괴, 도난, 분실, 사취
- ④ 건물외부에서 내부로 비, 눈, 우박, 진눈깨비 또는 싸라기눈의 침입 또는 들이침으로 입은 손해
- ⑤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 또는 가사용 기구에서 증기·물의 누출·일출 또는 스프링클러로부터 내용을 누출·일출로 인한 손해
- ⑥ 수탁물 사용 불능에 기인한 손해 등

5. 기타

가입 후의 유의사항

가입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본 대학의 담당창구(학생과·학생지원과·보건센터 등)로 통지해 주십시오.

- 학부, 학과 등을 변경하는 경우·보험기간 중 통산 1년이상 휴학할 때
- 가입 코스 변경 시·퇴학하는 경우

타 보험계약 등이 있는 경우

본 보험계약과 중복되는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이하 [타 보험계약 등]이라 합니다.)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다른 보험계약 등으로부터 보험금이나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다른 보험계약 등과는 관계없이 본 보험계약 가입내용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다른 보험계약 등으로부터 보험금이나 공제금이 지급된 경우: 손해액에서 이미 다른 보험계약 등에서 지급된 보험금이나 공제금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본 보험계약 가입내용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고 발생 시 수속

보험사고 또는 보험사고의 원인이 되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전화로 도쿄해상일동 학교보험코너에 다음 내용을 연락해 주십시오.

- 자신의 성명, 연령, 재적 대학명·사고 발생일, 시각·사고 발생 장소·피해자의 성명, 연령·사고 원인·피해(상해, 손괴등)의 정도
- 또한, 대학의 담당창구(학생과·학생지원과·보건센터 등)에 사고 내용을 통지하고 인수보험회사에 연락한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협의조정교섭 서비스에 대해

협의조정(示談) 교섭 서비스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본 보험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 쪽과 해결교섭을 행하는 [협의조정 교섭 서비스]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보험이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수보험회사의 담당부서로부터 조언을 토대로 가입자(피보험자) 자신이 피해자 쪽과의 협의조정 교섭을 진행한다는 점을 미리 양해하여 주십시오.

또한, 인수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 배상책임을 승인 또는 배상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배상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금으로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선취 특권에 대해

책임보험에 있어,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 보험사고의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인수보험회사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비용보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합니다.)에 대해 선취 특권을 가집니다.(보험법 제22조 제1항). [선취 특권]이란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에서 다른 채권자에 앞서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변제할 금액 또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금액의 한도에 대해서만 인수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법 제22조 제2항).

이를 위해, 피보험자에게 청구를 받은 인수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비용 보험금을 제외하고, 다음의 ①에서 ③까지의 경우에 한하므로 이해 바랍니다.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 이미 손해배상으로서 변제를 행한 경우
- ②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승낙했다는 것이 확인 가능한 경우
- ③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인수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 대해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인수보험회사가 경영파탄한 경우 등의 취급에 대해

보험회사의 경영이 파탄한 경우 등에는 보험금, 반환금 등의 지급이 일정기간 동결되거나, 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인수보험회사의 경영이 파탄하여 계약자가 개인 혹은 [소규모 법인](파탄 시에 상시사용 종업원 등의 수가 20인 이하)의 일본법인, 외국법인(일본의 영업소 등이 체결한 계약에 한합니다) 또는 맨션관리조합인 경우에, 본 보험은 [손해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보상대상이 되며, 보험금, 반환금 등은 원칙상 80% (파탄보험회사의 지급정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련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100%)까지 보상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개인 등 이외의 자인 보험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피보험자인 개인 등이 그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 한다면 그 피보험자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

보험 계약자인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는 본 계약과 관련된 가입자의 성명·학적번호·입금일 등의 개인정보를 인수보험회사에 제공합니다. 인수보험회사 및 인수보험회사 그룹 각사는 본 계약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험인수 판단, 본 계약의 관리와 이행, 부대 서비스 제공, 타 보험이나 금융상품 등 각종 상품·서비스 안내 및 제공, 설문조사 등을 위해 이용하고 아래 ①~⑤의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이용·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 보건의료 등 특별한 비공개 정보(민감 정보)의 이용 목적은 보험법시행규칙에 따라 업무의 적절한 운영 확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① 본 계약에 관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 위탁처(보험대리점 포함), 보험중개인, 의료기관, 보험금 청구·지급에 관한 관계처,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
 - ② 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 등을 판단할 때 참고로 타 보험회사, 일반사단법인 일본손해보험협회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 ③ 인수 보험회사와 인수 보험회사의 각 계열사 또는 인수 보험회사의 제휴기업 등과 상품·서비스 등의 제공·안내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일
 - ④ 재보험계약 체결, 갱신·관리, 재보험금 지급 등에 이용하기 위해 재보험 인수회사 등에 제공하는 경우
 - ⑤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자의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무 절차 및 담보권 관리·행사를 위해 그 담보권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식회사 홈페이지 (<http://www.tokiomarine-nichido.co.jp>) 와 타 인수보험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개인정보는 소속 대학이 작성한 가입자 명부를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에 제출함으로써 제공됩니다. 이 취급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 연락해 주십시오.(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중대 사유로 인한 해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는 가입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의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 수취인이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로부터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손해 등을 발생시킨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 수취인이 폭력단 관계자나 기타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관해 피보험자나 보험금 수취인에게 사기 행위가 있었던 경우

· 본 「안내」는 학연재부대 배상책임보험(시설배상 책임보험·생산물 배상책임보험·수탁자 배상책임보험)의 개요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험약관 등에 따릅니다만, 불명료한 점은 대학의 담당창구(학생과·학생지원과·보건센터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가입 후에는 「학연재부대 배상책임보험 가입자 안내서」를 읽어주십시오. 신청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는 본 「안내」 내용을 피보험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연재부대배상책임보험은,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와 이하의 보험회사(예정) 간에 체결하는 공동보험계약이며,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가 다른 인수보험회사의 대리·대행을 합니다. 각 인수보험회사는, 계약체결 시에 결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별로 보험계약 상의 책임을 집니다. 또한, 인수비율에 대해서는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 확인 바랍니다.

아이오이닛세이동화 손포재팬닛코아 도쿄해상일동(간사보험회사) 미쓰이스미토모해상

· 학연재부대배상책임보험은 배상책임보험 보통보험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생산물 특별약관, 수탁자 특별약관, 학연재부대배상책임보험 특약 조항 등에 근거하는 시설배상 책임보험·생산물 배상책임보험·수탁자 배상책임보험의 애칭입니다.

<계약자>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사업부 보험·보상과

우편번호 153-8503 도쿄도 메구로구 고마바 4-5-29

TEL : 03-5454-5275 URL : <http://www.jees.or.jp/>

중요사항설명서
(계약 개요 · 주의환기 정보의 설명)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계약개요 · 주의환기 정보의 설명

- 계약 개요는 가입하실 보험상품 내용의 이해를 돕기위해 특히 중요한 정보를 기재한 것입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 주의환기 정보는 보험 가입 신청을 하실 때, 가입하시는 학생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등 특히 주의해야 할 정보를 기재한 것입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 본 서면은 가입하신 보험에 관한 모든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험약관 등에 따릅니다. 불명료한 점이 있으시면 동협회 또는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에 문의하십시오.
※가입자증 등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안내」, 「학연재부대배상책임보험 가입자 안내」 등 가입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 개요

1. 상품의 구조 및 인수조건 등

- (1) **상품의 구조**
본 보험은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를 계약자로 하고 동 협회의 친조회원 대학·대학원·단기대학에 재적하는 학생을 피보험자(보험 대상이 되는 분)로 하는 단체계약입니다. 보험증권을 청구할 권리, 보험계약을 해약할 권리 등은 동협회가 가집니다.
가입 가능한 피보험자의 범위 등은 1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 (2) **보상 내용 · 보험기간 (보험의 계약기간)**
① 주된 지급 사유(보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 지급 보험금, ② 주된 면책사유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주된 경우), ③ 보험기간 등은 1~3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 (3) **인수조건 (보험금액 등)**
본 보험에서의 인수조건(보험금액 등)은 사전에 정해진 계약 코스 중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 코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 보험료 · 보험료 납부 방법

보험료는 가입하신 계약 코스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보험료 · 보험료의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보험료는 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보험료 납부방법은 대학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3. 만기환급금 · 계약자 배당금

만기환급금 · 계약자 배당금

주의환기 정보

1. 보상 중복에 관한 주의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이 이미 다른 보험으로 동종의 보험상품을 계약 중인 경우 보상범위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요구에 맞춰 계약내용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보상범위의 중복을 피하고자 계약내용을 재검토하는 경우 보상이 남겨진 계약을 해약할 때 그 보상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가입내용 확인사항 (의향 확인사항)

본 확인사항은, 만일의 사고 발생시에 안심하고 보험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가입하시는 보험상품이 고객님의 희망에 일치하는 내용인지, 신청하실 때 특히 중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하셨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이하의 각 질문사항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인에 대하여 불명료한 점 등이 있으시면, 「안내」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1. **보험상품이 이하의 점에 비추어 볼 때 학생 여러분의 희망에 일치하는 내용인지 「안내」 · 중요사항설명서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만일, 희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가입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십시오.**

2. **고지 의무 등**

- 가입 시 인수보험회사에 중요사항(주)을 신고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 가입 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계약이 해제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나 그 대리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피보험자(보험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대학집계보고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주)타 보험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3. **통지 의무 등**

- (1) **가입 후의 유의 사항 (변경사항의 통지 등)**
퇴학 등에 즈음한 통지의무나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3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 (2) **차기 갱신계약의 인수**
보험금청구상황 등에 따라서는, 차기 이후의 갱신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인수조건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양해해 주십시오.

4. **보험적용개시일**

- (1) **4월 입학생의 보험책임은 4월 1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됩니다. 단, 4월 1일 이후의 취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원 가입의 경우: 교수회 등에서 결의(주)한 보험 가입일이 4월 1일 이후인 경우는 결의된 보험 가입일 오전 0시가 책임 개시 시점이 됩니다.
② 임의 가입의 경우: 학생이 재적하는 회원대학에 대한 소정 보험료 납입일이 4월 1일 이후인 경우는 결의된 보험 가입일 오전 0시가 책임 개시 시점이 됩니다.
- (2) **9월 입학생의 보험책임은 9월 1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됩니다. 단, 9월 1일 이후의 취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원 가입의 경우: 교수회 등에서 결의(주)한 보험 가입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는 결의된 보험 가입일 오전 0시가 책임 개시 시점이 됩니다.
② 임의 가입의 경우: 학생이 재적하는 회원대학에 대한 소정 보험료 납입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는 결의된 보험 가입일 오전 0시가 책임 개시 시점이 됩니다.
- (3) **10월 입학생의 보험책임은 10월 1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됩니다. 단, 10월 1일 이후의 취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원 가입의 경우: 교수회 등에서 결의(주)한 보험 가입일이 10월 1일 이후인 경우는 결의된 보험 가입일 오전 0시가 책임 개시 시점이 됩니다.
② 임의 가입의 경우: 학생이 재적하는 회원대학에 대한 소정 보험료 납입일이 10월 1일 이후인 경우는 결의된 보험 가입일 오전 0시가 책임 개시 시점이 됩니다.
(주)보험가입 일시는 결의 일시 이상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5. **주된 면책사유(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주된 사유) 등**

2~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6. **보험회사 파탄시의 취급**

인수보험회사의 경영이 파탄한 경우 등에는 보험금, 반환금 등의 지급이 일정기간 동결되거나, 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7. **공동보험에 대하여**

공동보험에 대해서는 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8.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하여**

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보험금의 지급사유, 지급하는 보험금
- 보험 금액(계약금액)
- 보험 기간(보험의 계약기간)
- 보험료 · 보험료 납부방법

2. **중요사항설명서(계약개요 · 주의환기정보)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셨습니다가?**

특히 「주의환기정보 설명」에는 「주된 면책사유 등」 학생 여러분께 불이익이 되는 정보나 「보상 중복에 관한 주의*」, 「통지의무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특약을 계약하시는 분이 그 외 같은 종류의 계약을 하신 경우는 보상범위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의견 · 상담은

인수 보험회사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식회사 (간사 보험회사)
공무제 2부 문교공무실수편번호 102-8014 도쿄도 지요다쿠
산방초 6번지 4
TEL : 03-3515-4133

사고의 통보 · 상담은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코너
☎ 0120-868-066 (통화료 유료)
학교보험코너에 연결됩니다. 이로 인해 대학별 담당 학교보험코너에서 연락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시간: 평일 9:00 ~ 17:00 (토일 ·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지정 분쟁해결 기관

일반사단법인 일본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ADR 센터(지정 분쟁해결기관)
☎ 0570-022808 <통화료 유료>
IP전화는 03-4332-5241을 이용해 주십시오.
접수시간: 평일 오전 9시 15분~오후 5시 (토·일·국경일·연말연시는 휴무입니다.)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는 보험업법에 근거해 금융청장관이 지정한 지정분쟁해결 기관인 일반사단법인 일본손해보험협회와 수속실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동 협회에 해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 협회 HP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sonpo.or.jp/)